

#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|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|
| 의 안<br>번 호 |  |
|--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13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탄소발생 저감의 필요성과 생활속 실천방법 및 체험·교육을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‘기후변화체험교육관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·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목적(안 제1조)

-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### 나. 업무 및 기능(안 제3조)

- 기후변화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
-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
- 어린이·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

### 다. 관람시간 및 휴관(안 제5조 ~ 제6조)

-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.
-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, 1월1일, 설 및 추석 연휴기간으로 함.

라. 사무의 위탁(안 제10조)

-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교육·홍보·실천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.

마. 운영지원(안 제11조)

-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(1) 「지방자치법」

(2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.

다. 기     타 : 조례안 붙임

##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(이하 “체험교육관”이라 한다)은 구미시 남통동 200-2번지 일원에 둔다.

제3조(업무 및 기능) 체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후변화에 관한 전시·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
2.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
3. 어린이·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
4. 그 밖에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기후변화체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관람료 등) 체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 다만,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에게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5조(관람시간) ① 체험교육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휴관) ① 체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주 일요일, 1월 1일, 설 및 추석 연휴기간
2. 체험교육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람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교육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
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
3. 인화물질 및 위험물,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
4.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행위의 제한) ① 관람자는 체험교육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
2.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
3.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

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9조(변상책임)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교육관 내 전시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의 교육·홍보·실천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체험교육관을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지원)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·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위탁 해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2.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및 구미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####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생략

#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~ ⑤ 생략

[전문개정 2008.12.26]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2.4>

③ ~ ④ 생략

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>

⑥ 생략

[전문개정 2008.12.26]

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**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**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4.24]

#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요인

가. 체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안제3조)

- 기후변화에 대한 전시·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
-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
- 어린이·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
- 그 밖에 구미시장이 기후변화체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. 체험교육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(안제11조)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」  
(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, 2013.3.26)에 따라 원가산정의  
구성요소로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를 기본으로 한다

나.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준공이 2014년 2월 예정 이므로  
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.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경우 2014년 292,100천원을 포함하여 2018  
년까지 1,625,22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.

(단위:천 원)

| 구 분 \ 연 도 | 1차년도    | 2차년도    | 3차년도    | 4차년도    | 5차년도    | 합 계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세 출       | 292,100 | 318,654 | 328,213 | 338,059 | 348,200 | 1,625,226 |

☞ 1차년도 : 11개월분 비용 / 2차년도 이후 매년 인상률 3% 반영

#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 원)

| 구 분 \ 연 도 | 1차년도    | 2차년도    | 3차년도    | 4차년도    | 5차년도    | 합계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국 비       | -       | 60,000  | 60,000  | 60,000  | 60,000  | 240,000   |
| 도 비       | 30,000  | 30,000  | 30,000  | 30,000  | 30,000  | 150,000   |
| 시 비       | 262,100 | 228,654 | 238,213 | 248,059 | 258,200 | 1,235,226 |
| 기 타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 합 계       | 292,100 | 318,654 | 328,213 | 338,059 | 348,200 | 1,625,226 |

#### 5. 부대의견

#### 6. 작성자

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녹색정책담당관실 김은화  |
| 연 락 처  | (054)480~6563 |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기후변화체험교육관 시설운영 및 관리, 행정업무 등에 필요한  
노무비와 경비의 원가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음

### 1. 노무비 — 176,249 천원

- 행정업무 : 27,091 천원 × 1 명 = 27,091 천원  
21,673 천원 × 1 명 = 21,673 천원
  - 시설관리 : 37,183 천원 × 1 명 = 37,183 천원
  - 체험관 안내 및 해설 : 21,673 천원 × 2 명 = 43,346 천원
  - 환경미화원 : 23,478 천원 × 2 명 = 46,956 천원
- ※ 제조부문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및 전기정비공 임금을 근거로 산출

### 2. 경 비 — 127,231 천원

- 전력비 : 시설규모와 예상 수요를 기초로 산출  
일반용 전력(을)—고압A 4,530,800원 × 12 = 54,370 천원
- 상하수도, 세금과 공과금, 통신비 : 10,266 천원
- 감가상각비, 보험료, 기타경비 등 : 29,595 천원
-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: 33,000 천원

### 3. 일반관리비 — 15,174 천원

- ※ 용역원가의 5% 적용